

국제우편 반송불능 우편물 공고

국제우편물류센터 항공도착과에서 우편물 취급 중 발견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우편물을 국제우편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게시하오니 해당되는 우편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아래 제시 기간 내에 교부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☐ 건 수: 총 18,437건
- ☐ 공 고 기 간: 2026. 8. 1. ~ 2026. 8. 31.(1개월간)
- ☐ 교부청구기간: 2026. 8. 1. ~ 2026. 10. 31.(3개월간)
- ☐ 관련문의부서: 국제우편물류센터 항공도착과
(☎ 032-745-9822)

상기 교부 청구 기간 내 청구가 없는 탈락품은 우편법 제36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보관기간 경과 시점인 2026년 11월 중 폐기 또는 유가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(유가물로 판정된 탈락품은 해당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리됨)

2026. 8. 1.

국 제 우 편 물 류 센 터 장